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8조의 요약

- 법인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공제배제 규정
 - 법정이월결손금(5년내 발생 금액) 공제가능금액 적용 안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안함.
-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멸실되어 동업자권형(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비교)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시에는 이월결손금 및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
- 추계시 공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128)
 - 각종 소득공제도 적용 배제함.
 - 각종 투자세액공제도 적용 배제함.

●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I. 본 조의 개요

본 조는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본 법 제66조제3항단서 규정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 5년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계라 함은 어느 정도 추정의 요소가 가미된 상태의 계산인데, 이러한 개념에 의한 추계소득자체는 세액계산을 위한 직접적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 실제 금액확보와 장부·증빙을 부실하게 유지한 법인에 대한 불이익차원에서, 정확한 과세소득계산을 전제로 하여 적용하는 결손금공제나 세액공제는 해당연도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연도에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재나 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I. 추계시의 공제사양 부적합

1. 법인의 불성실 등 사유로 인한 추계

현행의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법인의 제반 장부·증빙 및 기장조직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시 본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방식으로 한다면 공제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① 이월결손금·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의 부적합

법인의 불성실 등 일반적 추계시에는 본 법 제13조제1호의 10년내 발생 이

월결손금공제와 본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는 법인세법에 의한 추계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하는 제반 소득공제·일부 세액공제 및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3. 12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2. 27 개정)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횡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② 비과세소득·감면 등의 적용

반면에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적용제외한다고 열거 규정하지 않은 법인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면제 및 감면은 그 요건에 해당되는 한 공제적용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추계

천재 및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라면 본 조의 부적용(결손금공제, 세액공제 예외)을 배제한다. 즉, 이런 사유라면 추계결정·경정되어도 이월결손금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반면에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상기에서 제기한 추계결정·경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